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

1. 관련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0.29.)
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%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·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,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,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'단계적 일상회복'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·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,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,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,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	▲ 유흥시설 등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마경륜·경정장 ▲ 카지노(내국인) ※ 유흥시설 등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콜라텍무도장	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	▲ (운영시간)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▲ (밀집도 제한) 시설에 따라 4㎡당 1명/한 칸 띄어 앉기/수용인원 50%/제한해제 등 적용 ▲ (음식섭취) 금지 유지, 단, 영화관(상영관), 실외 스포츠경기(관람)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	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
종교시설	▲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% 가능 ※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▲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(취식·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	소모임 장소는 종교 시설 내로 한정
사적모임	▲ (수도권) 최대 10명 ▲ (수도권 외 지역) 최대 12명 ※ 식당·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	-
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	▲ (1~99명)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▲ 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▲ (500명 이상) 원칙 금지,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각종 스포츠대회, (지역)축제에 한해 지자체·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	-

가. 적용기간: 2021. 11. 1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 까지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·도*

- 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5종)
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
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24종)

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, PC방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아이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**종교시설**

○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●(사적모임) 수도권 11명 이상,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

- * 식당·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, 최대 4명까지 가능

●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

- (1~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- 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- (500명 이상)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<모임·행사(예시)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
- 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종교단체에서는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이용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특히 개편 거리두기로 지침으로 종교활동 참여인원 확대 및 행사 개최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간 밀접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취식 금지, 출입자 명부관리, 증상자 이용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3. 기본방역수칙 1부.

4.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질의 답변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행정사무관

손문희

종무1담당관

전결 2021. 10. 29.

강성태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3708

(2021. 10. 29.)

접수

우 61485

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

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17

팩스번호 044-203-3462- / smh0828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